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4. 4. 25(목) 10:00

##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521호

나. 제 출 자 : 윤영희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4. 4. 15.

라. 회부일자 : 2024. 4. 15.

## 2. 제안이유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담당하는 해당 단체에 위기 대응과 지원 의무를 더욱 구체화하였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소중한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을 북돋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기본이념 수정 및 정의 신설(안 제2조 ~ 안 제2조의2)
- 나. 자살예방 관련 단체장 등의 의무 강화(안 제4조제3항)
- 다.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등 신설 (안 제6조)

라.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 성별 관련 규정 신설(안 제8조)

마. 자살예방의 날 관련 조항 신설(안 제15조제3항)

## 4. 관계법령

○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자살 위기 현장 출동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등과 자살예방의 날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을 복돋구자 발의된 안건임.

### 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2조의2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
-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수행업무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활동,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,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치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로 규정함.
-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
- 안 제15조에서는 자살예방의 날 행사와 교육, 홍보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
-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[시행 2022. 12. 11.] [법률 제18900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제2조의2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자살위험자"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파단되는 자를 말한다.
- 2. "자살위해물건"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 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 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.
- 3. "자살유발정보"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.
  - 가. 자살동반자 모집정보
  - 나.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
  - 다.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,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
  - 라.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
  - 마.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
- 4. "생명지킴이"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 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·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.
- 5. "자살예방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- 가. 생명존중문화 조성
- 나. 자살예방 상담 교육 및 홍보
- 다.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
- 라. 자살예방체계 구축
- 마.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
- 바.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
- 사.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.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
- 아.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# [본조신설 2019. 1. 15.]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 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2. 8., 2019. 1. 15.>
- **제11조(자살실태조사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,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 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11.>
  - 1. 성별ㆍ나이ㆍ학력,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에 관한 사항

- 2. 자살에 관한 생각,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 인에 관한 사항
- 3. 신문·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6. 10.>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, 결과발표,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2. 11., 2019. 12. 3., 2022. 6. 10.>
- 제12조(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·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2. 3.>
  -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 2. 3.>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

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 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. 15., 2022. 6. 10.>

- 1. 자살 관련 상담
- 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- 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- 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- 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- 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・훈련
- 7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, 2022. 6. 10.>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6. 10.>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